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18
----------	------

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08월 11일 강석주 의원(찬성 32명)
-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강석주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인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의 금연구역이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인근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금역구역 지정이 필요함.
- 이에 해당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연교육 및 홍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조문

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 및 제6항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다.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6호)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의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마.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내 금연교육 및 홍보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타

(1) 입법예고 ('25. 08. 20. ~ 08. 24.)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u>시장</u> ----- ----- ----- ----- --. <u>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u>
<u><신 설></u>	<u>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인 키움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u>

<u>5. ~ 7. (생 략)</u>	<u>(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 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u> <u>7. ~ 10. (현행 제5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u>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¹⁾.
- 그러나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주변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에 입출입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이에,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²⁾,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함.

2.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서 어린이 놀이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미터 이내의 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삭제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다음으로 개정안은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어린이 놀이터(안 제5조제1항제1호),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미터 이내의 구역(안 제5조제1항제4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안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 ----- ----- ----- ---.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u>말한다</u>) 및 어린이 놀이터	1. ----- ----- ----- <u>말한다</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삭 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5. ~ 7. (생 략)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7. ~ 10.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삭 제>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

--.

나. 주요 검토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은 ① 법정 금연구역(제9조제4항 및 제6항), ②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제9조제7항), ③ 공동주택 공동부분 금연구역(제9조제5항)으로 구분되는데,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지정 규정 >

구 분		대상
① 법정 금연구역	제9조제4항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제9조제6항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 30미터 이내의 구역
② 조례 금연구역 (제9조제7항)		지자체가 정하는 구역

③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9조제5항)	거주자가 요청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구역
-------------------------	------------------------

- 이 중 ① 법정 금연구역(국회·정부 등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경우,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³⁾. 또한, 구청장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⁴⁾.
- 그런데, ② 혈행조례 제5조제1항은,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이 강제된 ‘어린이 놀이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 25. (생략.)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⁵⁾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시장의 재량(임의규정: …지정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체계상 맞지 않음.

- 따라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 ‘법정 금연구역’들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3.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중 일부 장소 내 흡연실의 설치·운영 금지 단서 삭제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다음으로 개정안은 시장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중에 어린이 놀이터(현행 제5조1항제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현행 제5조제1항제3호),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현행 제5조제1항제4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현행 제5조제1항제5호),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현행 제5조제1항제6호) 등 일부 장소에는,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5) ※현행법상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금연구역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제조소등에 주유소가 포함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u>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u></p> <p>② · ③ (생 략)</p>	<p>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 ----- ----- ----- ----- -----. <단서 삭제></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학교), 제9호(어린이집), 제12호(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해당하는 아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법에서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흡연실 설치는 허용(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 하고 있음.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허용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5. (생략.)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

[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위와 같이 법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량으로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또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의 설치·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
- 따라서 현행조례는 법령의 범위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⁶⁾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실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단서 역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 금연환경의 조성에 홍보 추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끝으로 개정안은 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홍보’를 시장이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② 학교에서

6)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는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 및 상호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u>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② ~ ④ (생략)</p>	<p>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 -----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 -----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는 유관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 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나. 주요 검토 사항

-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금연 교육에 더해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 교육·홍보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밖에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조례의 범위),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9조의2(금연지도원) 등은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담배”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을 해당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제5조에서 제4조로 이동)에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법이라 간결하게 약칭하는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5.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첫째,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서울형 키즈 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현행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어린이 놀이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미터 이내의 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삭제하며,

셋째,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중 일부 장소(어린이 놀이터,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등) 내 흡연실의 설치·운영을 금지한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끝으로, **넷째**, 금연환경의 조성에 홍보 추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첫째**,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는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에 입출입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은 ① 법정 금연구역이 있고, ②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 등이 있는데, 이 중 ① 법정 금연구역(국회·정부 등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경우,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구청장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런데, ② 현행조례 제5조제1항은,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이 강제된 ‘어린이 놀이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시장의 재량(임의규정: …지정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체계상 맞지 않음. 따라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 ‘법정 금연구역’들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셋째**, 또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학교, 어린이집 등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흡연실 설치는 허용(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

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 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법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량으로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또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의 설치·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으므로, 현행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실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단서 역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넷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금연 교육에 더해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안번호
3018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강석주 의원	2025.8.11.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의 정의 규정(안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삭제 (안 제5조1항제1호, 제4호, 제8호)○ 서울형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6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내 금연교육 및 홍보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8.11. 조례안 개정 제안		
부 서 검토 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면으로부터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인근의 실외 구역 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강화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청소년 흡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팀장	민선정(☎2133-9466)
			담당 김선미(☎2133-946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구역 개소수 : 총 301,076개소 ('25.7.31.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법정 금연구역) : 283,153개소**

구 분	개소	구 分	개소	단속주체
공공청사	1,511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418	
유치원, 초중고	2,131	관광숙박업소	476	
대학교	75	체육시설	11,679	
의료기관, 보건소	18,951	사회복지시설	5,502	
어린이집	4,176	목욕장	678	
청소년활동시설	178	게임제공업소	3,863	
도서관	1,080	만화대여업소	115	관할 자치구
어린이놀이시설	8,808	고속도로 휴게시설	1	
학원	16,624	공동주택	567	
교통관련시설	1,201	음식점	166,774	
어린이운송용승합차	6,232	흡연카페	0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25,672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경계 30m	6,307	
공연장	134			

○ **서울시 조례(실외 공공장소) : 2,165개소**

구 分	개소	단속주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3	관할 자치구
버스정류소(중앙차로)	339	
도시공원	22	서울시(공원여가센터 등 위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1,801	관할 자치구

○ **자치구 조례(실외 공공장소) : 15,758개소**

구 分	개소	구 分	개소	구 分	개소
공원	2,110	거리 (통학로, 하천변 포함)	614	전통시장	40
절대보호구역	1,921	광장	19	마을마당 및 기타	386
버스정류소 (가로·마을)	10,056	어린이놀이터 주변	145	주유소, 충전소	214
택시 승차대	110	아동복지시설 주변	14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18
----------	------

발의년월일: 2025년 08월 11일
발의자: 강석주 의원(1명)
찬성자: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석, 박성연, 박춘선,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오금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2명)

1. 제안이유

-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인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의 금연구역이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인근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금역구역 지정이 필요함.
- 이에 해당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연교육 및 홍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담배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 및 제6항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다.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6호)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의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8호)
- 마.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 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내 금연교육 및 홍보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인 키움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연교육을 지원”을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으로, “금연교육을 실시”를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는 유관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신 설></u> 1. ~ 3. (생략)	제2조(정의) ----- -----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를 따른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u>시장은</u>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u>서울특별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u>서울특별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u>시장</u> ----- ----- ----- ----- --.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 3. (생략)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신설>

1. -----

-----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인 키움 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 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5. ~ 7. (생 략)	7. ~ 10.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삭제>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⑤ -----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 ----- -----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u>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 이를 설치 · 운영 할 수 없다.</u>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 ----- ----- ----- -----. <단서 삭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 -----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

-----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는 유관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 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법 제9조의5 -----

-----.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
법 제9조의5-----

-----.

②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제4호 및 제5호	○	금연구역 추가지정(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에 의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노면표시재+안내판) 설치비 발생 ⇒ 총 13,834천원 소요(추계기간 동안 1회만 발생)

* 흡연단속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부담¹⁾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등(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전제

- (표지판) 2024년 지하철역 출입구·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비용(P)²⁾ 활용
⇒ 장소별 ① 노면표시재(9,960원), ② 안내판(8,217원) 각각 1개 설치 가정
- (설치장소)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 총 761개소(Q) 설치³⁾를 전제
⇒ 서울형 키즈카페 76개소, 지역아동센터 413개소, 키움센터 272개소 가정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일회성 발생 전제
- (미 고려) 지정 및 설치가능 여부, 자치구와의 재정부담 여부,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논의추계) 서울시 시민건강국 문의 및 2024년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1) [자치구 단속부분]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흡연단속 인력 및 재정부담은 현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지출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과거사례 고려]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계함
⇒ 노면표시재는 규격 400×150의 알루미늄 재질이며, 금연구역 안내판은 규격 600×400의 포맥스2t 재질을 전제

3) [현황자료 고려] 각종 통계자료 및 서울시 관련부서 유선문의 정보를 토대로 설치장소 전제

①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현황 정보기준 76개소
②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련부서(아동담당관) 유선문의 결과 413개소(2025. 7월 기준)
③ (키움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련부서(아이돌봄담당관) 유선문의 결과 키움센터 272개소

* 장소 특성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황 자료를 토대로 단순가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3,834천원(추계기간 동안 1회만 발생)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5호)	13,834	-	-	-	-	13,834
	소계(a)	13,834	-	-	-	-	13,834
수입	-	-	-	-	-	-	-
	소계(b)	-	-	-	-	-	-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13,834	-	-	-	-	13,834

주 : 향후 금연구역 지정(서울시 지정·부담)을 전제하여 추계한 금액임

4. 덧붙이는 의견

- 해당 금액은 서울시 차원의 지정 및 부담을 전제하여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사업추진 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출요인에 의해 실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① [금연구역 지정여부] 시 지정여부에 따라 재정부담 상이

- 문의결과 금연구역 지정⁴⁾은 재량규정이므로 구역 지정 시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나, 서울시는 현재 흡연구역 단속인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⁵⁾ 있으며, 이에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⁶⁾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시 차원에서 별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일부 부담(추가로 구역 지정 시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업무, 민원 등의 문제)이 있기에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② [정비관련 재정부담] 추후 표지판 정비관리 주체 관련 자치구와의 재정부담 문제

- 이례적으로 시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정비관리 주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부담여부⁷⁾가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4) [규정에 의한 파급효과 발생 가능성 검토] 금연관련 서울시 조례는 각 자치구 조례 제·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적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해당 안건이 자치구 조례 및 재정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규정에 의한 파급효과)은 있을 수 있음

5) [자치구로 해당업무 사무위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자치구(구청장)로 사무위임한 상태임

6) [향후 심도있는 논의 필요] 특히 재정부담에 따른 이해관계가 얹혀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서울시 일회성 부담 가능성]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시 지정의 경우에도 현재 자치구에서 표지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사안도 최초 설치비용(최초 설치 시 서울시 부담, 이후 자치구와 협의가정) 만을 추계하였으나, 향후 표지판 정비와 관련하여 부담주체가 달라질 경우 실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등(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3,834천원**(추계기간 동안 1회만 발생)

$$\begin{aligned} &= \text{노면표시재 구매 비용} + \text{금연구역 안내판 구매 비용} \\ &= 7,580천원 + 6,254천원 \end{aligned}$$

나. 세부 항목별 비용

① 노면표시재 구매 비용(1차년도만 발생)

$$\begin{aligned} &= 7,580천원^8) \\ &= \text{노면표시재 단가}(P) \times \text{설치장소}(Q) \\ &= 9,960원 \times 761개 \end{aligned}$$

② 금연구역 안내판 구매 비용(1차년도만 발생)

$$\begin{aligned} &= 6,254천원^9) \\ &= \text{금연구역 안내판 단가}(P) \times \text{설치장소}(Q) \\ &= 8,217원 \times 761개 \end{aligned}$$

8) [단위변경에 따른 단수조정 유의] 7,579,560원이나 절상하여 7,580천원으로 작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
9) [단위변경에 따른 단수조정 유의] 6,253,137원이나 절상하여 6,254천원으로 작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